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12. 20.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6년 11월 15일

나. 발 의 자 : 허홍석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6일

라. 상정일자 :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16.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허홍석 의원)

가. 제안이유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정함.

나. 주요내용

-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결과 공개(안 제4조, 안 제7조)
-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안 제5조 ~ 제6조)
-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슬레이트 처리,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등 지원(안 제8조 ~ 제10조)

-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안 제11조)
-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을 근거로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조례안은 1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을 보면
 - 1)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전문가로 하여금 해체·제거하도록 함.
 - 3) 슬레이트 시설물 등의 사용실태 조사와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에 대한 처리기준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
 - 4) 또한 이에 대한 해체·제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과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연구,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5) 석면해체 작업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두어 안전관리 지도와 계몽을 하도록 함.
- 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써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고위험 물질임.
- 따라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홍석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85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일

발 의 자 : 허홍석 의원 외 6명

1. 제안이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결과 공개(안 제4조, 안 제7조)
- 다.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안 제5조 ~ 안 제6조)
- 라.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처리,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등 지원(안 제8조 ~ 안 제10조)

- 마.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안 제11조)
- 바.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6. 11. 8. ~ 11. 14.)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제1호에 따라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